

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(안)

의안 번호	31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6. 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,078,284천원으로서, 이중 12건에 1,107,518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

<u>계(12건)</u>	<u>1,107,518천원</u>
○ 측사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	3,675천원
○ '13.1.21~1.22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	175,533천원
○ '13.2.3~2.6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	56,439천원
○ '12.12.14 대설피해 민간인재해보상금	19,050천원
○ '13.1.21 대설피해 민간인재해보상금	91,125천원
○ '13.2.3 대설피해 민간인재해보상금	24,500천원
○ 원길1교 수해피해에 따른 가교설치	275,877천원
○ '13.7.11~7.15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	344,132천원
○ '13.7.11~7.15 집중호우 민간인재해보상금	73,787천원
○ 풍수해보험 추가지원 확대에 따른 보험금	40,000천원
○ '13.7.2 강풍피해농가 재해보상금	600천원
○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상환	2,800천원임.

3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8조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
-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

□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8조(예비비 사용의 제한)

- 업무추진비·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.